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9. 3.]

1.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5(선부동)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031-481-4895)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모집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9. 3.) 현재 다음 중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며,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3.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은 신청자격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ansanuc.net>)으로 받습니다.
※ 현장접수: 26. 9 .16.(수) 14:00~16:00, 안산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休실테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모바일 불가능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인터넷) '26.9.14.(월) 10시 ~9.18.(금) 16시 (현장)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26.9.16.(수) 14~16시	'26.9.21.(월)	'26.9.22.(화) ~9.30.(수)	검증 후 개별안내	'26.10.8.(목)

• 상기 일정은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호수	공급 대상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세대 당 계약면적(m²)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18A 18B	19	주거급여	2	10	17.66 17.66	12.7432 12.2032	1.8914 1.8914	8.9022 8.9022	41.1968 40.6568	18,000	1,800	16,200	90,000	20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5. 11.)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입주자 퇴실로 공실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 등(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임대시세를 갱신)을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 체결후 미입주 해약 신청 시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 18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 에어컨,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개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조)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중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9. 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인터넷(PC) 접수 '26. 9. 14.(월) 10시 ~ 9. 18.(금) 16시 ※ 인터넷(PC) 청약 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6. 9. 21.(월) 16:00 (확인방법)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ansanuc.net 또는 안산도시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ansanuc.net	'26. 9. 22.(화) ~ 9. 30.(수) [우편물 수신처]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202 안산올림픽기념관 3층 사업기획부 “선부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5335) ※ '26. 9. 30.(수) 소인분 까지 유효	'26. 10. 8.(목) 16:00 (확인방법)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ansanuc.net 또는 안산도시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ansanuc.net
■ 현장 접수 '26. 9. 16.(수) 14시 ~ 16시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안산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휴실테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ansanuc.net>)로 받습니다.(모바일 불가능)
-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소는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안산올림픽기념관 3층 사업기획부 선부동 행복주택 담당자]입니다.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2배수 정도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청약기간: '26. 9. 14.(월) 10:00 ~ '26. 9. 18.(금) 16:00**]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명의 휴대폰 준비 → 안산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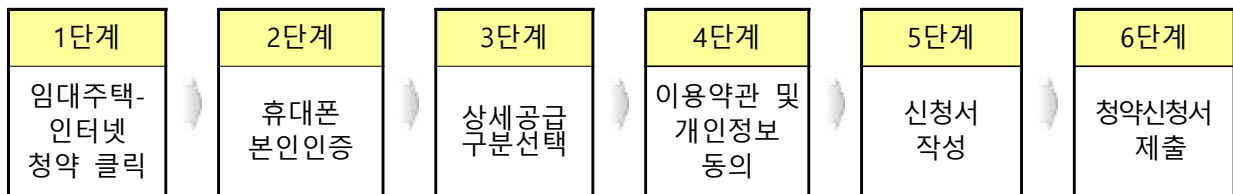
① 신청자 본인명의 휴대폰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안산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안산도시공사 청약센터(<https://apply.ansanuc.net>)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 인증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안산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청약신청 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입력해야 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체결안내문, 잔금안내문, 입주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이 해당 주소지로 발송되오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우편물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SMS 수신동의 및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6. 9. 21.(월)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ansanuc.net>) 및 청약센터(<https://apply.ansanuc.net>) 확인]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6. 9. 22.(화) ~ 2026. 9. 30.(수)]**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6. 9. 30.(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 및 방문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안산올림픽기념관 3층 사업기획부
※ 봉투 겉면에 "**선부동 행복주택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장애인·만65세 이상인자에 한함)

- 현장접수는 **2026. 9. 16.(수) 14시~16시에**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자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요건, 도로명 주소, 수급자 등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 접수하는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현장접수장소

신청장소	안산 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休 쉼터(소극장)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교통편	- 지하철 : 4호선 (고잔역) - 버 스 : 9, 62, 98, 101, 125, 511 (올림픽기념관, 올림픽기념관 맞은편 정류장 하차 후 도보2분)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도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 9. 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123456-1234567 (O) , 123456-1***** (X)

※ 제출된 서류는 탈락 시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폐기처리)

※ 인터넷(PC)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 제출서류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주의)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아래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수급자 증명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통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6. 10. 8.(목) 17:00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ansanuc.net>) 및 안산도시공사 청약센터(<https://apply.ansanuc.net>)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예비자는 기존 입주자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진행하므로 즉시 입주가 불가하며, 장기간 대기할 수 있음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키 수령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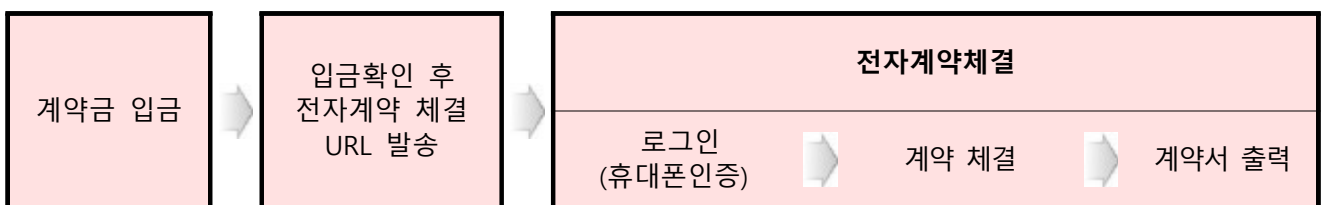
■ 계약 안내

[전자계약으로 우선 진행]

- 계약금 입금 기간 :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기간 : 별도 통보
 - 계약금 입금 순서대로 전자계약 체결 URL 발송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계약안내문을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절차】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계약금 입금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전자계약 체결 URL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서는 본인 이메일로 발송

7.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head> <tbody> <tr> <td>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body> </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자격을 확인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특성	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생자녀수에 따른 가산 자동차가액을 적용받으시는 분은 해당가액 인정) ■ 지구여건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구에서 직선거리 1km이내 서해선 선부역이 위치하고 1.5km이내 4호선 안산역이 위치 - 지구에서 직선거리 1km이내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가 위치 - 지구 반경 50m 이내에 선일초등학교, 반경 700m 이내에 선일중학교, 선부고등학교가 위치 - 지구 북동쪽으로 600m 거리에 선부체육관이 위치하고 북동쪽으로 700m 거리에 선부도서관이 위치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외부여건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또는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방범 및 안전 사유로 대지경계 상 펜스 등 설치될 수 있으며, 보도통행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통행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공동주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불빛, 소음, 건설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 여건 - 본 단지는 개방형 복도식 아파트임 - 주차대수는 총 140대(지상 79대, 지하 61대)이며, 지하주차장은 1층임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지역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이 가능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보차도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 또는 주출입구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여건 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관련항목	유의사항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 안테나는 101동에 설치되었으나, 전파수신 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야간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 • 세대 주방 식탁 등 조명기구는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이 불가함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며,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아파트 복도에 가스배관 및 소방배관이 노출시공 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외부에 면한 창호, 외벽 등은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될 수 있으며,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위에는 벽, 천장,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 시공됨. (바닥 난방 미 시공) • 세대 내 냉장고 콘센트는 냉장고가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세대내 환기방식은 18타입은 자연환기 방식이며, 36타입은 3종 환기방식임 • 세대내 냉매매립 배관이 미설치되어 에어컨 설치 시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의 크기에 따라 바닥에 함께 설치하는 것이 불가 할 수 있음 (실외기실 내 바닥 유효크기 : 18형(840mm × 540mm), 36형(870mm × 740mm))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 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및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상 조경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 아파트로서 내부 수선 및 구조 변경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인테리어 등의 사소한 행위 등의 경우도 퇴거 시에는 원상복구 처리해야 합니다. 파손 및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변상 조치 등이 이뤄지므로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실제 입주 전 해당 호실의 사전방문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시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시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8.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구분	적용 여부	구분	적용 여부
단열조치 준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수변전설비,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LED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현장위치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5	안산도시공사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주)선진전력기술단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추가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구분	설치항목
욕실	안전손잡이

안산도시공사 사업기획부

임대문의 등	· 안산도시공사 사업기획부 청약센터 : 031-481-4895
인터넷 청약	· PC: 안산도시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ansanuc.net)

계약체결 장소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休쉼터 ※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안산도시공사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ansanuc.net) 참여마당 내 「1:1 소통의 창」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

안산도시공사